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정 경 희 (Kyounghee Joung)**

목 차

- | | |
|-------------------------|----------------------------------|
| 1. 서 론 | 3.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 분석 |
| 1.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논의 및 제언 |
| 1.2 선행연구 | 4.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 도입의 의미 |
| 2. 기록정보서비스와 저작권의 관련성 | 4.2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 |
| 2.1 기록정보서비스의 의미 | 4.3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저작권 관련
메타데이터 |
| 2.2 기록정보서비스와 저작권 | 5. 결 론 |
|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 분석 | |
| 3.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 도입 이전 | |

<초 록>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 공공기록, 기록정보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because it does not cover all institutions under the Law of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econd, even though most of works made for hire in stat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ot yet made public, to enable a work to be made public is a requisite for public works to be used for free. This is to limit the scope of public work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at every school, which creates works made for hire, are covered in the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free use of works and change the requisite to make a work public for the disclosure th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element for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created in the records schedule for public institutions and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pyright information shall also be described when the records are registered.

Keywords: public works, free use, copyright act, public record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 접수일: 2014년 10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4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19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177-198,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4.177>>

1. 서론

1.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행정정보 공표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 생산된 정보를 이용자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발표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모토로 하는 정부 3.0 발표를 통하여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정보의 개방에서 더 나아가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를 복제, 전송, 배포, 변형 등의 방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도입된 후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 24조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이러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저작물중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허락을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여 미국 등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두어 왔다. 특히 공공기록물 중 상당수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데, 이것을 이관 받은 후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관리기관은 이관해 준 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기록관리기관은 이러한 허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기록물의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기록

정보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살펴보면 새로 도입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기록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 도입이 기록정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 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분석과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1.2 선행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부저작물에 관한 최근 연구는 그 이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연구들이 많다. 이들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법 제7조를 수정하여 정부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시키자는 제안(배대현, 2011; 홍재현, 2013; 정경희, 2007; 김현경, 2013), 둘째는 정부저작물의 저작권 소유를 현행처럼 국가로 하되 자유이용허락 제도를 적용하거나(이헌묵, 2011) 공정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김태영, 2010)는 제안, 셋째는 저작권 소유는 현행대로 하되 정부저작물이 기록관리법에 의하여 이관이 이루어질 때 저작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최영열, 2012; 김효기, 2010; 시귀선, 2009; 허선, 2008)이다.

첫 번째 유형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

도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르다. 저작권법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저작물'로 하고 그 2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여타 공공저작물을 추가하도록 하되, 이용시 변경된 내용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안(홍재현, 2013)과 현행 7조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저작물을 예시하는 대신 정부저작물로 대체하는 제안(정경희, 2007), 기본적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설정하여 공공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공공저작물 전체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면 공정이용 규정을 신설하거나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항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배대현, 2011)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는 현재 정부저작물의 국유저작권 체제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의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외의 많은 정부저작물과 구분이 어려워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약관에 의하여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현묵, 2011)과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여 정부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김태영, 2010)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제안은 주로 기록관리 분야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시귀선의 연구(2009)는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공표대상이 된 행정정보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설정하고, 그 외 저작물의 경우 기록관으로 이관이 될 때 저작재산권이 기록관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는 다르게 최영열(2012), 김효기(2010), 허선(2008)은 모두 기록관리법에 공공기록물 이관시 저작권이 양도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앞서 연구에서와 달리 정부저작물의 공표 여부의 문제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저작물뿐만 아니라 접수한 저작물의 문제 즉, 미공표 저작물과 접수한 공공저작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연구는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공공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Mann(2000)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공공기록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프레임워크 새롭게 개발되어야 함을 독일의 출판협회에 의하여 기소된 CB-infobank 판결을 예로 들어 분석하고, Kahle(2001)은 도서관과 보존기록관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을 보장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특히 공공기록물에 대한 공적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부터 거의 1세대가 지났다. 현재는 정부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취지에서의 법개정을 위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대신 최근에는 정부저작물 보다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은 학술 저작물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Malakoff & Bachtold, 2003).

2. 기록정보서비스와 저작권의 관련성

2.1 기록정보서비스의 의미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보서비스라는 용어는 주로 영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관에서의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기록정보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Pugh(2005)의 저서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 Manuscripts*나 Cohen(1997)의 저서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두 보존기록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저술이다. Pugh는 기록정보서비스(reference services in archives)를 이용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록 이용자와 기록을 연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기록정보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보았다(Pugh, 2005). 즉, 기록관과 소장자료 및 기록생산자에 대한 정보 제공, 소장자료로부터 추출한 정보의 제공, 다른 기록관이나 정보원으로서의 안내, 정보이용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정보 제공, 기록사용에 대한 안내, 연구과정에 대한 안내, 소장자료에 대한 물리적 접근, 소장자료의 복제본 제공 및 대출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Dearsteyne(2000)은 'reference services'라는 용어가 그동안 보존 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지나치게 협소하고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보다 이용자 지향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research services'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Dearsteyne이 제시한 'research services'에는 이용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분석하고 마케팅의 개념이

적용되며, 주제색인을 통한 검색강화, 이용자 요구에 맞추어 발견도구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개념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정보서비스 개념에는 영구보존 기록 이외의 현용 혹은 준현용단계의 기록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용 및 준현용단계에서의 기록의 활용은 정보서비스라는 용어보다는 '정보공개'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기록관리법에서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인 기록관의 업무에 수집된 기록의 활용,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포함시키고 있다(법 제13조). 그리고 이것은 주로 정보공개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과 이에 대한 활용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공개하거나, 설령 미리 공개하더라도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의 활용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처리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윤은하, 2012). 따라서 이러한 정보공개업무를 기록정보서비스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기록정보서비스라는 용어는 향후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활용이 정보공개 수준을 넘어서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록관의 정보공개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2.2 기록정보서비스와 저작권

기록정보서비스를 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

쳐 기록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특히 이러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더욱 그러하다. 다음에서는 기록과 저작물과의 관련성, 기록을 소장한 기관과 저작권법, 기록 소장 기관에서 저작권법의 면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기록관리법 제3조의 2에 의하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다. 「저작권법」 제2조의 1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여기서 창작이란 매우 독특하고 고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Padfield, 2005).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법 제4조). 즉, 기록관리법에서 예시한 기록물 중 창작성을 갖춘 것으로서 위의 예시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물 중 사실 자체의 전달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그것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이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류에 속하는 보고서, 계획서, 처리서, 회의록과 시청각류, 행정박물, 구술기

록, 간행물 등은 저작물성을 갖춘 경우가 많고, 대장이나 카드, 도면류 중에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이 많지만 일부는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저작물성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시귀선, 2011).

국내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등의 자료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 대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 문서, 기록 등의 자료를 보존 및 대출 또는 그 밖에 공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즉, 보통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기록관과 영구기록을 관리하는 보존기록관이 공중에게 소장기록을 개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관으로 아직 이관되지 않은 현용기록은 그 소장처가 처리과이므로 이를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처리과가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별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처리과의 기록에 대한 저작권은 대체로 생산자인 처리과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떠한 기록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양도나 이용 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처리과에서 기록관 혹은 보존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을 때 발생하며, 이 경우엔 「저작권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부 제한된 수준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록관이나 보존기록관이 법 제31조의 규정

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소장한 기록을 이용자가 복제 요청하였을 경우 아날로그 형태로 전체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에게 1부 제공해주거나 보존용으로 복제(이 경우 디지털복제도 가능)하거나 다른 기록관이 요청하였을 경우 1부 복제물을 제공해주는 것(이 경우 디지털복제 불가능)이다. 또한 소장한 기록의 전체를 디지털로 복제하여 기록관간에 전송의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로 복제한 기록을 출력하거나 기록관간에 전송의 방식으로 주고받을 때 도서관보상금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 분석

3.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 도입 이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공공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을 들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둘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셋째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넷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다섯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

도가 그것이다. 5가지 유형의 저작물의 공통된 특징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하였다는 점과 이 저작물들이 정부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헌법이나 고시 이외에도 각종 보고서, 계획서, 회의록, 간행물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 그 생산기관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 설령 두 번째 유형의 저작물의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7조의 기본적 성격 즉,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이라고 해석하더라도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비용을 낸 국민이 결국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이중부담이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오승중, 2012). 이와 같은 논리로 미국의 저작권법은 미국 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업무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저작권법 제105조).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지나쳐 그 보호를 완화시켜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논의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가능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으로 나타났다. 이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

물을 민간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할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방안과 이용허락의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지침 제2조 2호)이며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지침 제2조 6호)이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하게 할 것(지침 제5조)과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처분 및 이용은 그 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지침 제6조), 제3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 그 기관이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을 행사할 것(지침 제7조), 국가가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이 이관될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이관 받은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지침 제8조) 등을 정하고 있다.

3.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 분석

「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이 도입된 것은 2013년 12월 30일이고(법률 제12137호) 이것이 시행된 것은 2014년 7월 1일부터이다. 이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생산

한 저작물은 세금을 사용하여 공익 목적으로 생산되므로 저작권재산권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작권법」 개정이유서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조항의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4년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 등’ 조항도 신설되었다. 다음에서는 이 조항들을 중심으로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 자유이용의 요건, 자유이용의 범위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3.2.1 대상 저작물

1)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유형

기본적으로 자유이용 저작물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였거나 이들 기관이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그런데 생산주체와 계약에 따른 저작권재산권 보유 주체에 따라 실제로 자유이용이 되는 방법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어떤 특별한 표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이다. 둘째는 특정한 표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2항)이다.

첫 번째 유형 즉, 어떠한 표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소위 정부저작물이라고 불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고, 둘째는 직접 작성한 저작물은 아니지만 계약에 의거하여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저작물이다.

두 번째 유형 즉, 어떤 특별한 표시에 의거하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6.11.]

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역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거나 계약에 의거하여 저작권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둘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인 저작물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이다.

정리하자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정부저작물과 그 외 공공 기관에서 생산된 저작

물 및 정부의 위탁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에 두루 적용되는 규정인데, 그 적용방법은 서로 구별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생산한 저작물은 그 목적상 공공에게 널리 공개할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공표되었을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정부의 저작물에 비하여 그 공공성이 낮으므로 기관의 의지에 따라 자유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2) 자유이용의 예외 대상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없이도 자유이용이 가능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저작물이나 계약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 전부를 소유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저작물 내에 국가안전이나 사생활,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인 저작물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도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국유재산법」 제7조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유재산이 된 저작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유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허락 표시를 통하여 자유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자유이용 예외 대상 저작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저작물 내에 비공개 대상이 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이들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되기는 어렵다. 둘째는 그 권리소유가 국가이므로 「저작권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저작물이다. 첫 번째 유형과 달리 이 저작물을 생산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표시를 함으로써 자유이용 저작물로 전환될 수 있다.

3.2.2 자유이용을 위한 요건

자유이용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저작물 모두에 적용되는 것과 공공기관이 생산한 저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업무상작성해야 할 것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즉,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을 기획해야 하고,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해야 하며, 셋

<표 1>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의 요건

기관구분	생산주체 요건	기관 내에서 생산한 저작물			기관 외에서 생산한 저작물		
		업무상 작성할 것	공표한 저작물일 것	이용허락 표시가 있을 것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공표한 저작물일 것	이용허락 표시가 있을 것
국가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공공기관		○	○	○	○	×	○

째 업무상 작성해야 하며,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고,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로 법인 등의 단체에서 창작될 경우 여러 사람이 협업에 의하여 창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중 누군가를 창작자로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인이나 단체에게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한다(오승중, 20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저작권법」 제9조의 법인 등에 포함되므로 업무상저작물을 생산한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2) 공표한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정의 25호에 의하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정의 3호).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의 대표적인 예는 웹사이트에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인터넷 이용자 모두 혹은 로그인 절차 등을 통하여 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시’에 대한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에는 없다. 그러나 공중을 대상으로 미술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위에서 언급한 공연, 공중송신, 전시의 공통적 성질은 모두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상 ‘공중’이란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앞의 <표 1>의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식으로 특정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된 저작물의 경우엔 공표되지 않아도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공표권의 예외에 따라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했을 경우 상대방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3)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할 것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면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계약체결 시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는 방법과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모두 계약에 의하여 가능하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계약에 따라 창작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경우 특약을 통하여 양도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을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법 제45조 제2항)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65조의 12 저작권의 귀

속 등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헌법과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장) 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양측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특약이 없을 경우 그 지분도 균등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창작자가 각자 저작재산권자로서 별도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민간인과 공동으로 창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하여 창작하는 저작물이 많으므로 대체로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1조의 3호는 「저작권법」에서 위임한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저작물이 자유이용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2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를 개발하고 이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을 위한 표준라이선스로 정하였다. 라이선스는 4개 유형이다. 4개 유형중 제1유형이 저작자를 표시할 경우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도 작성할 수 있다. 즉 제1유형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이다. 4개 유형 모두가 요건으로 삼는 것은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다. 공공누리 이용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공공누리에 따라 000(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이라고 표시하거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제2, 3, 4유형을 저작물에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진다. 제2유형은 영리목적 목적일 경우 이용이 제한되고, 제3유형은 사용목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2차적저작물 작성은 제한된다. 또한 가장 제약이 많은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2차적저작물 작성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제1유형 이외에 다른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문화체육관광부, 2014)에서 공공누리 2~4유형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도 공공누리 제1유형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효력을 위해

〈표 2〉 공공누리의 유형 및 이용허락 범위

유형	마크	이용허락의 조건
제1유형		• 출처표시
제2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서라기보다 일반인들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제24조의 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에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하지 않는 공공누리 제3, 4유형을 표시한다면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과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누리 제1, 2유형을 적용해야 한다.

3.2.3 자유이용의 범위

「저작권법」 제24조의 2 조항의 명칭은 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다. 자유이용이란 다시 말하면 허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창작자에게 재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식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특

히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자유이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4조의 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자유이용이란 그 목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나 공정이용은 그 이용 목적이 주로 비영리적인 경우에 적용되나 자유이용은 그 목적에 불문하고 어떠한 이용도 허락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관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2관의 각 규정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제38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명시하도록(제37조)하고 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야함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다시 말하면 자유이용대상인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저작물의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중 2차적저작물의 작성과 저작권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차적저작물작성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물로 제작하여 만든 새로운 창작물을 말하며 이러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작성은 저작권권의 하나로 자유이용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상 변경, 형식의 변경, 제목의 변경 등은 가능하지 않다.

4. 논의 및 제언

4.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 도입의 의미

4.1.1 현용기록의 정보서비스화

정부가 생산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취지 하에 관련 법들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정보공개법에는 이용자의 요구를 사전에 예측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규정이 도입되었고, 공공기관이 생산한 데이터 목록을 공표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법도 제정되었다. 또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공개대상이 된 공공정보를 콘텐츠산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이나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모두 정부 3.0이 표방하는 첫 번째 이슈인 '개방'과 관련된 법적 조치들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공공정보가 아무리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이러한 절차 없이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공공저작물을 복제나 전송, 배포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공공정보의 공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록관리의 전 과정에서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관리는 주로 정부의 설명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이용은 주로 이용자의 요청에 근거한 공개 및 정보제공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적극적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법적 환경은 이용자의 요구를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기록을 공개하고 재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공기록을 제공하는 기록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저작물을 물리적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저작물의 온라인 원문서비스 등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향후 기록관리에서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이용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소극

적인 청구기반의 공개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정보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1.2 보존기록의 서비스 확대

2010년에 제정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이관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시의 형태로 제정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저작권법」에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이관시 해당 기록 중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생산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콘텐츠 제작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등이 가능하였다. 게다가 이관대상 기록 중 해당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아닌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이용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이관기록의 이용을 위하여 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생산한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이용허락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기록을 이관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일일이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상의 원문공개나, 기록의 재가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록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저작물을 복제나 재전송, 재가공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몇 가지 보다 명확히 해야 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다음에서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2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

4.2.1 적용대상 기관의 제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서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 적용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그친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지방공기업이나 학교에서 생산한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아니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관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한 허락을 저작권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이들 기관의 업무상저작물은 자유이용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록정보서비스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의 적용대상기관은 기록관리법의 적용대상 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외의 기관도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자유이용 저작물 규정을 적용할 때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서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 적용기관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 제24조의 2를 신설하기 이전에 적용하였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의 적용대상 기관과 비교하였을 때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저작권법」 내에서 일관성도 부족하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도서관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작물 중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자인 도서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기준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생산하는 기록 중에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 2호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범위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등이었지만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은 이 외에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

<표 3>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

법 적용기관	기록관리법	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지침
국가/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공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적용대상 기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그외	규정없음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기록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 규정이 적용되어 기록 이관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2 공표 요건의 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저작물 중 업무상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전부를 소유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설령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라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이다. 이 권리는 저작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공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평가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자의 결정에 반하여 제3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공표되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저작자에게 공표권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오승중, 2012). 그러나 설령 미공표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공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시 저작자가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공공저작물 중 업무상저작물의 인격적 권리의 주체는 당연히 그 저작물을 생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생산한 저작물의 공표권 행사는 개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공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그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공표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개를 통하여 공중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당연하고도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공공저작물 생산 기관이 공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은 해당 저작물에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사업상의 비밀 등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것이 함부로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 1~3호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사업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미 이 규정만으로도 공중에게 공개되지 말아야 할 공공저작물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저작물은 미공표저작물인 경우가 대다수다. 설령 사전정보공개제도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공공저작물이 공개됨으로써 공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공공저작물의 일부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을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공공저작물이 이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제105조 즉, 미국정부의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내에 적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제105조에서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저작물을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국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을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어도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기록을 공표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3 공표권 제한의 적용범위: 기증과 이관

그런데 미공표 공공저작물이 기록관으로 이관된 것을 「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을 적용하여 해석해볼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은 공표권의 제한 규정 중 하나로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제31조의 도서관 등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기관이 도서관 기록 등을 보존, 대출하고 공중에게 이용시키는 기관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록관도 제31조 도서관 등에 포함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제11조 제5항은 저작자가 ‘기증’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증에 대한 「저작권법」 상 정의는 없다. 사전상 ‘기증’이란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을 말한다. 공공기록관은 기본적으로 모기관으로부터 기록을 이관받는다. 이관을 기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기록관리법 상 ‘이관’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관의 사전상 정의는 “관할을 옮김”(한국기록학회, 2008) 혹은 “기록처분스케줄의 일부로서 기록을 옮기는 과정, 특히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또는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기는 과정”(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을 말한다.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구매의 방식으로 확보하는데, 학위논문이나 미공표된 회색문헌은 기증의 형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공공기록관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미공표 자료를 이관의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즉, 기증과 이관은 도서관이나 공공기록관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하지만 자료를 제공하는 측에서 보면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기증은 자료 제공자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고, 이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주체를 옮기는 것이다. 저작물을 도서관 등에 기증할 때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기증 행위가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저작물의 이관은 생산기관 즉, 저작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기증에서처럼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 기록은 생산단계에서의 가치는 소멸되었지만 사회적, 역사적 가치가 증명되어 제3자에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이다. 즉,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록물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기록관리법 제38조의 2). 설령 자료를 제공하는 측의 적극성이라는 의지 차원에서 볼 때 도서관의 기증과 기록관의 이관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활용으로부터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에 대한 혼동과 그로 인하여 기록관의 이관이 공표권의 제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유이용대상 예외 저작물을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로 제한하거나 혹은 『저작권법』 제11조 5항 공표권 제한 사유에 기증과 더불어 ‘이관’을 추가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3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저작권 관련 메타데이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생산되거나 접수된 모든 기록이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니므로 공공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은 생산시점에서 해당 기록이 자유이용 저작물인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관 받은 후 자유이용 저작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업무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록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는 기록 생산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을 이관하고, 기록관은 기록생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지 2년 혹은 10년이 지난 기록에 대하여 해당 기록이 업무상저작물인지, 공표되었는지,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록의 생산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기준표나 기록관리시스템상에 기술해줄 필요가 있다. 즉, 기록관리법이 적용되는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메타데이터도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기록관리기준표에서 기록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비치여부 및 이관시기, 공개여부, 접근권한 6가지이다. 향후 기록의 활용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개여부를 밝히도록 한 것처럼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 여부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하여 이관 후 활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구기록물 기술규칙』(2008년 12월 23일 제정)의 4.6장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기록물에 대해 저작권, 복제, 출판조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록물군, 기록물 계열에서 사본제작, 재가공, 출판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기록물철과 기록물건에서 접근이 가능한 기록물의 사본제작, 출판조건 등을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자유이용저작물 여부가 기술되어 이관된다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록의 공표여부와 저작재산권 양도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국가기록원 2012)에는 23개의 상위요소와 65개의 하위요소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중 저작권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준현용 기록의 활용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제공하는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즉, 복제와 전송, 재가공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법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기록관리법 제4조). 이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 기록관의 업무로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뿐만 아니라 활용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3조 제2항 2호). 이것은 동조 동항 제5호에 기술된 정보공개청구 접수 업무와는 다른 영역이라고 보여진다. 즉, 기록관이 정보공개 청구 접수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하여 기록관의 인적, 물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지만(문효주, 2009),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저작권 정보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도 활용을 위한 인프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5. 결 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한 것은 정부에서 생산한 정보를 최대한 개방하고 공유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록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장 기록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상세히 검토해본 결과 기록관리기관에서의 정보서비

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급 학교가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생산기관에서 누락되었다. 따라서 교육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이관되는 공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24조의 2 도입이전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이용허락을 얻어야하는 상황이다. 교육기관이 갖는 공공성으로 볼 때 그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역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 이외에는 자유이용 공공저작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공표를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저작물을 자유이용의 예외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여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영 (2010). 정부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법무전공.
- 김현경 (2013).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 25(1), 195-226.

- 김효기 (2010).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 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문효주 (2009).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물 접근성 확충 방안: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배대현 (2011). 공공정보, 公益에서 公有(public domain)로 옷을 갈아입다: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한 저작물 公有 문제 검토. IT와 法연구, 5, 1-31.
- 시귀선 (2009).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59-188.
- 시귀선 (2011). 공공기록물의 저작권과 이용 증진.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오승중 (2012). 저작권법. 제2판. 서울: 박영사.
-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 이현묵 (201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에 관한 법제도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5(1), 49-73.
- 정경희 (2007).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 정부저작물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4(1), 165-186.
- 최영열 (2012). 공공기록물의 저작권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기록물관리학전공.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허선 (2008). 공공기록물의 접근권 보장 방안 연구: 저작권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 홍재현 (201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315-343.
- Cohen, Laura B. (1997).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NY: Routledge.
- Dearstyne, Bruce W. (2000). Managing historical records programs. Oxford: Altamira Press.
- Kahle, Brewster (2001). Public access to digital material. D-Lib Magazine 7(10). Retrieved July 15, 2014, from <http://www.dlib.org/dlib/october01/kahle/10kahle.html>
- Malakoff, David & Bachtold, Daniel (2003). Who owns, Who pays? U.K., U.S. offer answers for journals. Science 301. Retrieved Aug. 15, 2014, from http://astro.berkeley.edu/~kalas/ethics/documents/intellectual_property/29a.pdf
- Mann, Roger (2000). New aspects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the use of archives in Germany.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22(2), 93-95.
- Padfield, Tim (2005). Copyright for archivists and users of archives. (2nd Ed.) London: Facet publishing.

Pugh, Mary Jo (2005).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 manuscripts. SAA. Archival Fundamental Series II.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Retrieved Oct. 10, 2014, from <http://www2.archivists.org/glossary>

[법률, 고시, 표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 『저작권법』 [법률 제12137호, 2013.12.30]
-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97호, 2014.11.4]
- 『콘텐츠산업진흥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7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 국가기록원 (201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NAK/S 14:2011(v2.0)
- 국가기록원 (201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AK/S 8:2012(v2.0)
- 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Dae-Heon (2011). Public sector information dressed in the public domain: focused on the public domain of the PSI. *IT & Law Review*, 5, 1-31.
- Choi, Young-Yeol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pyright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record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Heo, Sun (2008). A study on measures to guarantee the access right to public records: on the copyrigh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ng, Jae-Hyun (2013). Th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activation of use of public wor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315-343.
- Joung, Kyounghee (2007). A study on copyright problems for promo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focused on government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1), 165-186.
- Kim, Hyo-Gi (2010). A study on improving copyright system of the government publication.

-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Hyun-Kyung (2013). Legal issue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government works. *SungKyunKwan Law Review*, 25(1), 195-226.
- Kim, Tae-Young (2010).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fair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Glossary of archival studies*. Seoul: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 Lee, Hun Mook (2011). A study on the open license of the copyrighted works owned by the public sector institutions.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5(1), 49-73.
- Moon, HyoJoo (2009). A study on the method to expand the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for activ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focused on the case of Swede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Oh, Seung-Jong (2012). *Copyright law*. 2nd ed. Seoul: Bakyoungsa.
- Si, Kwi-Sun (2009).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2), 159-188.
- Si, Kwi-Sun (2011). The public record's copyright and fair use promotions. Seoul: RIKAR.
- Youn, Eunha (2012).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63-179.